

의안번호	2220182
의 퇴 인	염태영의원
회 답 일	2026. 7. 28.
추계번호	26B3736

교통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매년 11월 14일을 교통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억 4,730만원, 2032년 5억 7,33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9억 4,100만원(연평균 5억 8,81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교통의 날(안 제5조)	73.3	73.3	73.3	73.3	73.3	366.5	73.3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안 제18조)	500	500	500	500	500	2,500	500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 설정(안 제29조)	74	—	—	—	—	74	14.8
합계	647.3	573.3	573.3	573.3	573.3	2,941	588.1

-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교통의 날)	교통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14일을 교통의 날로 한다.(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조(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하되, 제13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국내외 교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교통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단계적 추진전략 3.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 및 교통시설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4. 최저교통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에 대한 교통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 교통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8. 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교통정책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시·도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시·도의 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16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수립할 수 있다.(제1항)	의무·재량 규정
		시·도교통기본계획은 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교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교통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단계적 추진전략 3.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의 체계적 운영 및 교통시설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항 7. 지속가능 교통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8.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효율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조(시·군교통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기본계획 및 시·도교통기본계획에 따라 10년 단위의 관할 구역의 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교통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제16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등 7. 교통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 8.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9.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6	안 제12조(국가교통위 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국가교통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2항) 1. 국가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국가교통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4.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국가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7	안 제13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제1항)	의무규정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3항)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의무규정
8	안 제14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2항)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의무규정
9	안 제16조(지방교통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10	안 제17조(국가교통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8조(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관련 기술의 혁신, 교통권의 보장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최저교통서비스의 조사·평가 등을 위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12	안 제19조(협회의 설립)	교통 관련 기업, 그 밖에 교통활동과 관련된 자는 교통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13	안 제21조(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의 개선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4	안 제22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교통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5	안 제24조(교통안전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6	안 제26조(교통기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개발·보급·관리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7	안 제27조(국제협력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정책 개발, 전문인력 교류, 교통기술의 개발 및 협력, 공동조사·연구 등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기관과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량규정
18	안 제28조(교통권의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9	안 제29조(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교통서비스의 기준(이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서비스 제공실태 등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관리 및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5항)	재량규정
20	안 제30조(교통서비스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통서비스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서비스개선지역(이하 “교통서비스개선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1항)	재량·의무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서비스개선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이하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항) 1. 광역 교통서비스개선지역: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지역 교통서비스개선지역: 지역적 차원에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의무규정
21	안 제31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량·의무 규정
22	안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조(교통의 날)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7조(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미대상) 현행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국가 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3	안 제8조(시·도교통 기본계획의 수립)	—	•(미대상): 기존 지방계획 수립 예산을 활용하여 통합 수립 가능하여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안 제9조(시·군교통 기본계획의 수립)	—	•(미대상) 기존 시·군 단위 관련 계획 수립 예산을 활용하여 통합 수립 가능하여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5	안 제10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	•(미대상) 현행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기존 용역 예산을 활용하여 국가교통기본계획으로 통합 수립하게 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음
6	안 제12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미대상): 현행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13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14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7	안 제16조(지방교통위원회의 설치)	—	•(미대상): 현행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8	안 제17조(국가교통조사)	—	•(미대상) 현재 시행 중인 국가교통조사의 근거 법령을 이관하는 사항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9	안 제18조(교통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0	안 제19조(협회의 설립)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현시점에 지원 내용 및 규모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21조(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안 제22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안 제24조(교통안전의 강화) 안 제26조(교통기술의 진흥)	—	•(미대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21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제22조), 「교통안전법」(안 제24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해당 법률을 통하여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12	안 제27조(국제협력의 증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정책 개발, 전문인력 교류, 교통기술의 개발 및 협력, 공동조사·연구 등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기관과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협력대상 국가·기관, 협력사업 범위, 공동조사·연구 규모, 파견·초청 인력, 사업기간 및 자원분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므로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정부에서 교통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음 [교통분야 국제협력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교통분야 국제협력 주요사업</th><th>2025</th><th>2026</th></tr><tr><td>국제협력기구 지원 등</td><td>190</td><td>229</td></tr><tr><td>ITS 국제협력</td><td>950</td><td>950</td></tr><tr><td>드론해외진출지원</td><td>1,500</td><td>1,200</td></tr><tr><td>글로벌철도연수과정</td><td>1,547</td><td>1,527</td></tr><tr><td>해외인프라시장개척</td><td>56,510</td><td>56,490</td></tr><tr><td>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td><td>33,461</td><td>33,461</td></tr><tr><td>해외철도수주지원</td><td>2,288</td><td>2,288</td></tr><tr><td>물류산업지원 중 물류기업 해외진출지원</td><td>110</td><td>110</td></tr><tr><td>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td><td>4,794</td><td>3,549</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예산사업설명자료	교통분야 국제협력 주요사업	2025	2026	국제협력기구 지원 등	190	229	ITS 국제협력	950	950	드론해외진출지원	1,500	1,200	글로벌철도연수과정	1,547	1,527	해외인프라시장개척	56,510	56,490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33,461	33,461	해외철도수주지원	2,288	2,288	물류산업지원 중 물류기업 해외진출지원	110	110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	4,794	3,549
교통분야 국제협력 주요사업	2025	2026																															
국제협력기구 지원 등	190	229																															
ITS 국제협력	950	950																															
드론해외진출지원	1,500	1,200																															
글로벌철도연수과정	1,547	1,527																															
해외인프라시장개척	56,510	56,490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ODA)	33,461	33,461																															
해외철도수주지원	2,288	2,288																															
물류산업지원 중 물류기업 해외진출지원	110	110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	4,794	3,549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3	안 제28조(교통권의 보장)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관련 시책 및 교통정책의 내용 및 사업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므로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4	안 제29조(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등)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5	안 제30조(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교통서비스개선지역의 지정 기준, 대상지역의 수와 범위, 개선대책의 내용, 국가기간교통시설 반영 여부, 국비·지방비 분담구조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정부는 도로 및 철도 벽지노선 운행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음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주요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벽지노선 지원사업</th><th>2025</th><th>2026</th></tr><tr><td>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td><td>37,537</td><td>39,423</td></tr><tr><td>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사업(벽지노선 경영손실 지원)</td><td>123,812</td><td>114,121</td></tr><tr><td>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td><td>32,799</td><td>33,881</td></tr><tr><td>농촌형교통모델(자율)</td><td>24,924</td><td>26,596</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벽지노선 지원사업	2025	2026	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37,537	39,423	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사업(벽지노선 경영손실 지원)	123,812	114,121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32,799	33,881	농촌형교통모델(자율)	24,924	26,596
벽지노선 지원사업	2025	2026																
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37,537	39,423																
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사업(벽지노선 경영손실 지원)	123,812	114,121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32,799	33,881																
농촌형교통모델(자율)	24,924	26,596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6	안 제31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복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할 경우 추가제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의견수렴 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7	안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제정안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최저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권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부 조문은 현행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현시점에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업비 추산이 가능한 안 제5조(교통의 날), 안 제18조(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안 제29조(최저교통 서비스 기준 등)와 관련한 소요비용을 추산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교통의 날(안 제5조)

- 제정안은 교통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14일을 교통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인 ‘육운의 날’¹⁾ 기념행사 평균 소요비용인 7,330만원을 적용하여 매년 교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육운의 날 기념행사 예산현황(2023~2025년)

(단위: 백만원)

일자	행사 주최	소요 비용
2023.11.14.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80
2024.11.14.	전국택시조합 연합회	70
2025.11.14.	전국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 연합회	70
평균		73.3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제정안에 따라 매년 11월 14일을 교통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3] 교통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교통의 날(안 제5조)	73.3	73.3	73.3	73.3	73.3	366.5

1) 육운(陸運)이란 육상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일을 의미하며, 대한제국 시절인 1903년 고종황제가 경복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11월14일)을 기념하여 1987년 육운 업계 기념일로 제정하여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과 포상이 시행되고 있음

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안 제18조)

□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기술의 혁신, 교통권의 보장 및 최저교통서비스의 조사·평가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분석을 위한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국토교통부는 현행 국가교통조사사업을 통해 운영중인 교통빅데이터 구축체계를 활용·고도화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차량GPS·모바일통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교통빅데이터 DB를 구축·운영 중으로, 제정안에 따른 플랫폼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견임

[표 4] 기존 국가교통조사사업 중 교통빅데이터 구축 관련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주요 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교통빅데이터DB 구축사업 (민간데이터 구매비용)	1,590 (255)	1,508 (349)	1,660 (428)	1,427 (461)	1,515 (461)	7,700 (1,95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최저교통서비스 조사·평가, 교통권 진흥 정책 지원 등 기존 국가교통조사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어야 하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할 데이터 구매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 현시점에 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데이터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나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국가교통조사사업의 민간데이터 구매 규모(5억원) 수준만큼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기존 국가교통조사를 통해 구축한 교통데이터 DB를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5]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 · 운영(안 제18조)	500	500	500	500	500	2,500

다.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안 제29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교통서비스를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제정안은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 고시의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 이를 추정하기 곤란하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 및 의견을 참고하여 5년 주기로 지표 및 기준을 고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사례를 참고할 경우 2028년 7,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유사사례: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지표개발 및 최저서비스 기준 마련연구(2020~2021)” 연구용역 사업비는 7,370만원으로 나타남
-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 설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 설정(안 제29조)	74	-	-	-	-	74

4.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매년 11월 14일을 교통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교통의 날(안 제5조)	73.3	73.3	73.3	73.3	73.3	366.5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 · 운영(안 제18조)	500	500	500	500	500	2,500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 설정(안 제29조)	74	—	—	—	—	74
합계	647.3	573.3	573.3	573.3	573.3	2,941

-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